



8개년 위탁 원가 인건비 기준 동향

동일 사무 단가 상승률의 격차와 그 요인

작성	위탁관리 본부장
검수	연구소장
www.kiem.re.kr	

요약

보고서의 대상

인건비 기준 8종 ·
2017~2024

위탁 사무의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의 근거가 되는 기준은 하나가 아님. 사무의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, 엔지니어링 노임단가,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,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등 **서로 다른 기준**을 씀. 이 보고서는 그 가운데 8종의 **2017년부터 2024년까지 8개년**을 모아 얼마나 올랐는지를 집계한 것임.

결과는 고르지 아니함. 같은 기간 **최저임금은 52.4% 올랐고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16.5% 올랐음**. 상승 폭의 차이가 **3.2배임**.

그 차이는 무작위가 아니라 **단가를 정하는 방식**에 따라 세 유형으로 나뉨 — **법으로 강제되는 기준** (최저임금)이 가장 크게 올랐고, **실제 임금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기준** (엔지니어링·측량·건설사업관리·중소제조업)이 그 다음이며, **권고나 예규로 정해지는 기준** (사회복지시설·학술연구용역)이 가장 적게 올랐음.

수치를 그대로 읽어서는 아니 되는 자리도 있음. 조사 단가는 **기준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.6일로 줄어** 일당의 상승분이 월 인건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아니함. 건설사업관리 고급 기술인의 일당은 36.9% 올랐으나 근무일수를 반영한 월액은 **28.2%** 오른 것으로 계산됨.

법정 최저 위에 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**생활임금**도 있음. 2024년 기준 **월임금 개 광역**이 시행하며 시급이 최저임금의 **1.14~1.29배**임. 인건비의 하한이 **자치단체의 정책**에도 달려 있음.

자료는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정리하여 둔 인건비 기준 원문임. 각 기준의 공표 주체와 산정 방식이 달라 **단가의 절대액을 서로 견주는 것은 뜻이 없으므로**, 이 보고서는 각 기준의 **같은 항목이 8년간 얼마나 움직였는지**만을 다룸.

비교한 기준	기간	최저임금	학술연구용역
8종	2017~2024	+52.4%	+16.5%

보고서 핵심

위탁 원가의 인건비 기준은 **같은 물가를 겪고도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음**. 8년 누적으로 최저임금 **+52.4%**, 측량 고급 **+44.7%**, 중소기업 평균 **+42.1%**, 건설사업관리 고급 **+36.9%**, 엔지니어링 평균 **+30.1%**인 반면 사회복지시설 1호봉 **+16.6%**,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**+16.5%**임. 차이를 결정한 요인은 **누가 어떻게 정하는가**임 — 법정 강제 > 표본조사 > 권고·예규의 순서로 상승 폭이 작아짐. 그 결과 사회복지시설 1호봉이 최저임금 월액의 **1.77배에서 1.36배**로 좁혀졌음. 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**어느 기준을 쓰는 사무인지와 그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**를 함께 보아야 함.

I. 자료와 방법

01 8개 기준의 개관

사무마다 다른 근거

공표 주체 6개소

위탁 사무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어느 기준을 쓰는지 **사무의 성격**이 정함. 엔지니어링 용역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, 측량은 측량기술자 노임단가를, 연구용역은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를 쓰는 식임. 각각을 정하고 공표하는 주체도 다름.

표 1. 비교한 8개 기준

구분	공표 주체	형식	비교에 쓴 항목
최저임금	고용노동부	고시(법정)	시간급을 1일 8시간으로 환산
엔지니어링	엔지니어링협회	조사·공표	기술자 1일 평균임금
측량	공간정보산업협회	조사·공표	기술계 고급 노임
건설사업관리	건설엔지니어링협회	조사·공표	고급 기술인 노임(환산비 1.000)
중소제조업	중소기업중앙회	조사·공표	전 직종 평균 임금
소프트웨어	소프트웨어산업협회	조사·공표	IT기획자 1일 평균임금
학술연구용역	기획재정부	계약예규	책임연구원 월 기준단가
사회복지시설	보건복지부	권고기준	생활시설 1호봉 월 봉급

자료: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정리한 각 기준의 공표 원문

어느 기준을 쓸지는 임의로 고를 수 없음. **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을 따르고**,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**기준이 없는 용역에 준용**되며,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**단순용역**은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씀. 원가를 산정하기 전에 **사무의 성격**을 먼저 가려야 함.

생활임금은 8개 기준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음. 자치단체마다 금액이 다르고 **2024년 이전의 회차가 자료실에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여** 8개년 추이를 낼 수 없기 때문임. 다만 법정 최저 위에 놓이는 기준이므로 06절에서 2024년 단면만 따로 다룸.

8개 기준 가운데 **6개가 일당**이고 2개가 월액임. 그대로 견줄 수 없으므로 절대액을 비교하지 아니하고 **8년간 몇 퍼센트 올랐는지**만을 다룸.

I. 자료와 방법 (계속)

02 비교의 방법과 한계

읽기 전의 확인

네 가지 제약

표 2. 비교의 제약

구분	내용
절대액 비교 금지	기준마다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가 다름 (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·사회보험료의 포함 여부). 그래서 변동률만 비교하였음
대표 항목의 선정	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기준등급 하나 를 골랐음(건설사업관리는 환산비 1.000인 고급, 측량은 기술계 고급). 다른 등급은 폭이 다를 수 있음
소프트웨어의 결측	2017년과 2019년 자료가 없어 2018~2024년으로 따로 계산하였음. 다른 기준과 같은 기간이 아니므로 표에 함께 놓지 않음
물가와 대조하지 않음	이 보고서는 기준들 사이의 차이만 다룸. 물가상승률과의 대조는 별도 자료가 필요하므로 하지 아니하였음

자료: 본 연구소가 비교의 범위를 정리

기간을 2017년부터 잡은 데에는 자료의 사정이 있음. 자료실에 정리한 회차가 **대체로 2017년부터** 갖추어져 있어 그 앞의 결측이 늘어남. 8개년은 **자료가 이어지는 최장 구간임**.

둘째의 제약과 관련하여 등급을 고른 기준도 밝혀 둠. 건설사업관리는 등급별 환산비가 공표되는데 **고급을 1.000**으로 두므로 고급을 골랐고, 측량은 기술계와 기능계가 나뉘어 있어 **기술계 고급**을 골랐음. 소프트웨어는 직무가 스무 종을 넘어 **IT기획자** 하나를 골랐음. 다른 등급이나 직무를 고르면 상승 폭이 다르게 나올 수 있음.

첫째의 제약을 조금 더 적어 둠.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기본급·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·사회보험료(회사부담분)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나, 최저임금은 **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**을 기준으로 하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일정 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됨. 두 값을 나란히 놓고 어느 쪽이 높다고 말하는 것은 **뜻이 없음**.

대표 항목을 하나만 고른 데에도 한계가 따름. 사회복지시설은 호봉표가 **서른 호봉 넘게** 이어지는데 이 보고서는 1호봉만을 보았음. 호봉이 올라갈수록 금액의 간격이 달라지므로, 상위 호봉의 상승 폭은 1호봉과 다를 수 있음.

넷째의 제약도 밝혀 둠. 어떤 기준이 「덜 올랐다」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이지 **물가에 비하여 부족하다는 판단이 아님**. 그 판단을 하려면 소비자물가지수나 임금상승률 통계를 함께 놓아야 하며, 이 보고서는 거기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음.

II. 8개년 추이

03 누적 상승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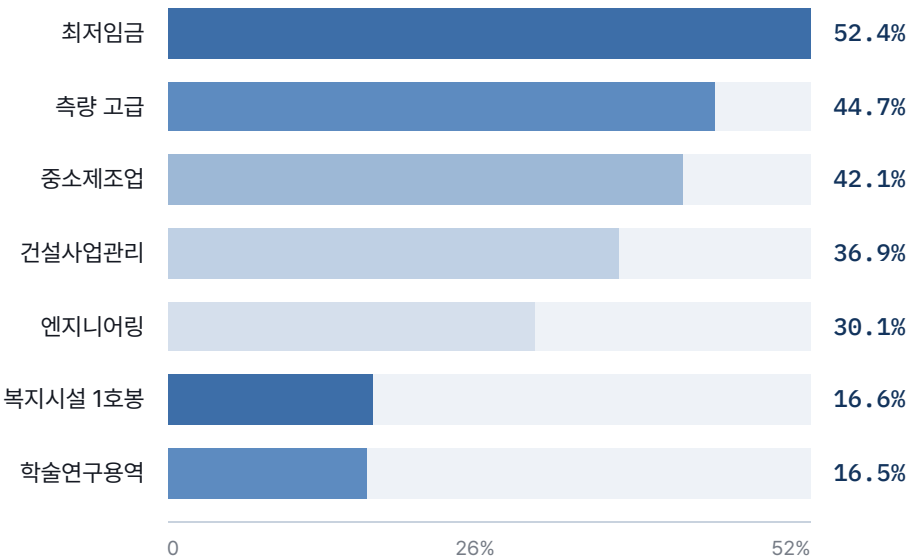
3.2배의 차이

2017 → 2024

표 3. 기준별 누적 상승률

구분	2017년	2024년	상승률
최저임금(일급)	51,760	78,880	+52.4%
측량 고급	185,959	269,008	+44.7%
중소제조업 평균	74,445	105,773	+42.1%
건설사업관리 고급	261,926	358,628	+36.9%
엔지니어링 평균	221,413	288,009	+30.1%
사회복지시설 1호봉	2,397,000	2,795,900	+16.6%
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	3,110,229	3,622,585	+16.5%

자료: 각 기준의 공표 원문. 위 다섯은 일급, 아래 둘은 월액임



누적 상승률

최저임금과 학술연구용역의 차이가 **3.2배**임. 아래 두 기준이 나머지와 뚜렷하게 떨어져 있음.

II. 8개년 추이 (계속)

04 연도별 추이

해마다의 값

2017~2024

표 4. 기준별 연도별 단가

구분	최저임금 일 급	엔지니어링 일 급	측량 고급 일 급	건설사업관리 일 급	중소제조업 일 급	학술 책임 월 액	
2017	51,760	221,413	185,959	261,926	74,445	3,110,229	2
2018	60,240	227,943	197,383	271,764	78,014	3,169,323	2
2019	66,800	231,729	201,702	278,247	88,503	3,216,863	2
2020	68,720	240,850	209,221	290,868	94,836	3,229,730	2
2021	69,760	244,514	212,851	301,354	96,716	3,229,730	2
2022	73,280	254,452	218,088	311,735	98,336	3,327,026	2
2023	76,960	280,364	251,261	323,027	101,116	3,496,704	2
2024	78,880	288,009	269,008	358,628	105,773	3,622,585	2

자료: 각 기준의 공표 원문. 중소기업은 각 해 1월 적용분

세로로 읽으면 기준마다 오르는 모양이 다를 수 있음. 최저임금은 2018~2019년에 큰 폭으로 오르고 2020~2021년에 거의 멈추었으며, 측량과 건설사업관리는 **2023년에 큰 폭으로 올랐음**. 학술연구용역은 **2020~2021년에 같은 값에 머물렀음**.

2023년에 표본조사 단가가 함께 오른 것은 **기준근무일수의 축소**와 시기가 겹침. 근무일수가 줄면 일당은 오르므로 그해의 상승분에는 그 요인이 섞여 있음(09절).

표를 가로로 읽어 어느 기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음. 앞의 다섯은 일급이고 뒤의 둘은 월액이며,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도 서로 다름.

중소제조업 노임은 2019년에 한 해 만에 **13.4% 오른** 것으로 나타남. 이 노임은 조사 대상이 **매출액 30억원 이상 중소기업**이고 직종이 백 종을 넘어 표본 구성에 따라 평균이 크게 움직일 수 있음. 특정 해의 큰 변동을 그 산업의 임금 변화로 곧바로 읽지 아니하여야 함.

8개년을 통틀어 **전년보다 값이 낮아진 해는 없음**.

II. 8개년 추이 (계속)

05 세 갈래로 갈리는 폭

결정 방식과 상승 폭

법정 · 조사 · 권고

일급 기준을 상승률 순으로 늘어놓고 각 기준이 **어떻게 정해지는지**를 옆에 적으면 순서가 겹침.

표 5. 결정 방식별 상승 폭

구분	해당 기준	상승률 범위	결정의 성격
법정 강제	최저임금	+52.4%	최저임금위원회 심의·의결. 미달 계약은 무효
표본조사	측량·중소제조업·	+30.1 ~	협회·단체가 실제 지급
	건설사업관리·엔지니어링	+44.7%	임금을 조사하여 공표
권고·예규	사회복지시설·학술연구용역	+16.5 ~ +16.6%	소관 부처가 예산 사정을 반영 하여 정함

자료: 각 기준의 공표 원문과 유의사항을 근거로 본 연구소가 분류

세 갈래가 겹치지 아니하고 **구간이 나뉘어** 있음. 표본조사 기준의 하한(30.1%)과 권고·예규 기준의 상한(16.6%) 사이에 **13.5%p의 공백**이 있어,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만 알아도 상승 폭의 대략을 알 수 있는 상태임.

다만 이 구분이 **인과를 증명하는 것은 아님**. 표본조사 기준이 더 오른 데에는 해당 산업의 임금이 실제로 올랐다는 사정이, 권고·예규 기준이 덜 오른 데에는 그 분야의 임금이 덜 올랐다는 사정이 각각 작용하였을 수 있음.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**같은 순서로 늘어선다**는 사실만이 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임.

실무의 부담도 갈래마다 다름. 법정 기준은 **어기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** 하한이어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, 표본조사 기준은 **회차를 골라 쓰면** 되며, 권고 기준은 **따르지 아니하여도 벌칙이 없으나** 준수율이 조사·공표됨.

갈래마다 **단가가 바뀌는 시점**도 다름. 최저임금은 매년 8월에 고시되어 이듬해 1월부터 적용되고, 표본조사 단가는 전년 말에 공표되어 1월부터 적용되며, 중소기업노임은 **반기마다** 공표됨. 권고·예규 단가는 개정 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연중에 바뀌기도 함.

그럼에도 이 순서가 실무에 주는 뜻은 분명함. 위탁 사무의 원가를 여러 해에 걸쳐 산정할 때, **어느 갈래의 기준을 쓰는 사무인지**에 따라 인건비가 오르는 속도가 달라짐. 같은 자치단체가 같은 해에 계약하는 사무라도 근거 기준이 다르면 **단가의 개정 폭이 다르게 나타남**.

III. 단가를 정하는 방식

06 법정 강제의 궤적

최저임금

+52.4%

최저임금은 8개 기준 가운데 **유일하게 법이 강제**하는 기준임. 「최저임금법」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**무효**로 하고, 그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(제6조제3항).

위탁 실무에 직접 닿는 조항이 더 있음. **도급인이 책임질 사유**로 수급인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**도급인이 연대하여 책임**을 짐(제6조제7항). 책임 사유에는 **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**가 포함됨. 위탁기관이 원가를 산정할 때 인건비 단가를 낮게 잡으면 **그 자체가 책임의 근거**가 될 수 있음.

8개년의 궤적은 고르지 아니함. **2018년 16.4%, 2019년 10.9%**로 크게 오른 뒤 **2020년 2.87%, 2021년 1.5%**로 낮아졌고, 2022~2023년 5%대를 거쳐 2024년 2.5%가 되었음.

표 6. 최저임금 연도별 인상률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인상률	16.4%	10.9%	2.87%	1.5%	5.05%	5.0%	2.5%

자료: 각 연도 최저임금 고시

최저임금에는 예외도 있음. **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**인 사람에게는 다른 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,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**단순노무업무 직종은 제외**됨. 위탁 사무에 단순노무가 많은 점을 생각하면 실무에서 이 예외가 적용될 여지는 넓지 아니함.

법정 최저 위에 자치단체가 따로 정하는 기준이 **생활임금**임. 2024년 기준 **열일곱 개 광역**이 시행하고 있고, 시급이 가장 높은 단체는 광주광역시 12,760원, 가장 낮은 단체는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로 11,210원임. 같은 해 최저임금 9,860원에 견주면 **1.14배에서 1.29배**임.

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성격이 다름.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정 하한이나, 생활임금은 **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여 소속 근로자와 일정 범위의 위탁·용역 근로자에게 적용**하는 기준임.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조례마다 다르므로, 위탁 사무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에는 **해당 자치단체의 생활임금 조례가 그 사무에 미치는지**를 확인하여야 함.

8개년 누적이 52.4%인데 그 가운데 **앞의 두 해에서 29%p 남짓**이 나옴. 위탁 원가에 미친 충격도 그 두 해에 몰렸을 것으로 보이나, 개별 사무의 원가에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음.

III. 단가를 정하는 방식 (계속)

07 표본조사 단가의 궤적

시장 임금의 반영

+30.1 ~ +44.7%

엔지니어링·측량·건설사업관리·중소제조업의 노임단가는 협회나 단체가 **실제 지급된 임금을 조사**하여 공표하는 것임. 산정의 근거가 정책 판단이 아니라 **조사 결과**라는 점에서 앞뒤의 두 갈래와 성격이 다름.

조사의 규모도 공표문에 함께 실림. 예컨대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**모집단 8,492개** 가운데 유효 7,346개에서 표본 886개를 뽑아 854개를 회수하여(회수율 96.4%) 산출한 것임. 표본과 회수율이 공표된다는 것은 **수치의 근거를 되짚을 수 있다**는 뜻이며, 권고·예규 기준에는 없는 특징임.

표 7. 표본조사 기준의 8개년 추이

구분	2017년	2024년	상승률
측량 고급	185,959	269,008	+44.7%
중소제조업 평균	74,445	105,773	+42.1%
건설사업관리 고급	261,926	358,628	+36.9%
엔지니어링 평균	221,413	288,009	+30.1%

자료: 각 기준의 공표 원문. 모두 1일 기준 금액

네 기준 사이에도 **14.6%p의 차이**가 있음. 조사 대상 산업이 다르므로 이 차이는 **각 산업의 임금 사정**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.

조사 단가에 담기는 임금의 범위도 공표문에 밝혀져 있음.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**기본급·제수당·월간상여금·월간퇴직급여충당금·월간사회보험료(회사부담분)**로 구성되며, 유급휴일에 따른 급여는 **포함**되고 시간외·휴일·야간수당은 **제외**되어 있음. 건설사업관리 노임가격은 조사된 일일금액에 **휴지기간(동절기 등) 임금보전액**을 더한 값임.

소프트웨어는 2017년과 2019년 자료가 없어 표에 넣지 아니하였음. **2018년부터 2024년까지**만 보면 IT기획자의 1일 평균임금이 316,403원에서 481,654원으로 **52.2%** 올랐고,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일급의 상승률은 30.9%였음. 기간이 달라 다른 기준과 나란히 놓을 수는 없으나, **표본조사 기준이 언제나 법정 기준보다 덜 오르는 것은 아니라는** 사실을 보여 주는 사례임.

III. 단가를 정하는 방식 (계속)

08 권고와 예규 단가의 궤적

가장 적게 오른 둘

+16.5 ~ +16.6%

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성격이 다른 문서이나 공통점이 있음. 둘 다 **조사 결과가 아니라 소관 부처의 결정**으로 정해지고, 8년간 거의 같은 폭(16.6%와 16.5%)으로 올랐음.

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에 따른 **권고기준**임. 강제 기준이 아니어서 국가는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할 의무를, 지방자치단체는 **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**를 질 뿐이며 미준수를 이유로 한 벌칙은 없음. 다만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종사자의 보수 수준과 지급 실태, 지자체별 준수율을 **3년마다 조사·공표**하여야 하므로 이행 여부는 관리됨.

기준의 변형도 허용됨. 기본급과 수당 기준은 **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에 따라 별도로 마련할 수 있음**. 그러므로 이 보고서가 집계한 값은 전국의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**권고된 기준선**임.

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별표에 실림. 표의 값은 **1개월 22일, 참여율 50%**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어서 실제 참여율이 다르면 증감시켜야 하고, 인건비는 기준단가만이 아니라 **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을 합한 금액**임.

사회복지시설 기준에는 유의할 사항이 둘 더 있음. 하나는 이 보고서가 집계한 표가 **생활시설 기준**이라는 점임. 이용시설(사회·노인·장애인)은 직위 명칭과 금액 체계가 달라 별도의 표를 따르므로, 이용시설 사무에는 그 별표를 확인하여야 함. 다른 하나는 표의 직위가 **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분류**이며 개별 법령상의 자격과는 별개라는 점임.

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시설도 있음. **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**과 **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을 적용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·재가노인복지시설**은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아님. 위탁 사무가 이들 시설이면 인건비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함.

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에서도 **단가만으로 인건비가 되지 아니한다**는 점을 확인하여야 함. 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제수당·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을 더한 금액이며,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**연 400%**, 제수당과 퇴직급여충당금은 「근로기준법」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을 수 없음.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에는 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·일반관리비가 **과다 반영되지 아니하도록**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 자료를 활용하도록 예규가 정하고 있음.

적용 범위에도 제한이 있음. 엔지니어링·측량·소프트웨어 개발처럼 **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**을 따르므로,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는 **기준이 없는 용역에 준용**되는 자리에 있음. 원가계산 기준이 없는 **단순용역**은 이 표가 아니라 중소제조업 단순노무종사원 노임을 씀.

IV. 수치를 읽을 때의 함정

09 기준근무일수의 축소

일당과 월액의 어긋남

22일 → 20.6일

표본조사 단가는 **1일 기준**으로 공표됨. 월 인건비를 산출하려면 **일당에 월평균 근무일수를 곱함**. 그런데 그 근무일수가 8년간 줄었음.

「근로기준법」 제55조제2항(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)이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면서 **월평균 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.6일로** 축소되었음. 엔지니어링은 2023년 적용분부터, 측량은 2023년 적용분부터, 건설사업관리는 2023년 8월 변경승인으로 각각 반영되었음.

표 8. 일당 상승률과 월액 상승률

구분	일당 상승률	근무일수 반영 월액	차이
건설사업관리 고급	+36.9%	+28.2%	-8.7%p
엔지니어링 평균	+30.1%	+21.8%	-8.3%p

자료: 2017년은 22일, 2024년은 20.6일을 곱하여 계산. 계산은 본 연구소가 한 것임

차이가 **8%p** 남짓임. 일당만 보면 건설사업관리 단가가 36.9% 오른 것으로 읽히나, 한 사람을 한 달 쓰는 데 드는 금액은 **28.2%** 오른 것으로 계산됨.

이 계산에는 전제가 있음. 근무일수의 축소는 **같은 임금을 더 적은 날에 나누어 지급하게 되었다는 뜻**이므로 일당이 오르는 요인이 되기도 함. 즉 위 표의 「차이」를 단가가 **부풀려졌다는 뜻**으로 읽어서는 아니 되고, **일당 상승률을 월 인건비 상승률로 그대로 옮길 수 없다**는 뜻으로 읽어야 함.

근무일수의 변화가 기준마다 다른 시점에 반영된 점도 확인하여야 함. 엔지니어링과 측량은 **2023년 적용분부터**, 건설사업관리는 **2023년 8월 변경승인**으로 각각 반영되었음. 소프트웨어는 조사 초기부터 20.8일 안팎을 써 왔으므로 이 변화의 폭이 작음.

건설사업관리는 등급 체계 자체도 바뀌어 왔음. 현행 **4단계(특급·고급·중급·초급)**는 2014년 7월 변경승인에 따른 것이고 그 전에는 3단계, 더 전에는 5단계였음. 「건설기술진흥법」 개정(2018. 12. 13.)으로 **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**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였음. 오래된 회차의 원문을 인용할 때에는 **등급과 명칭이 지금과 다를 수 있음**을 확인하여야 함.

실무의 함의는 분명함. 여러 해에 걸친 위탁의 원가를 비교할 때에는 **일당과 근무일수를 함께** 보아야 하며, 특히 2023년을 사이에 둔 비교에서는 근무일수가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.

IV. 수치를 읽을 때의 함정 (계속)

10 기준연도의 어긋남

적용연도와 기준연도

학술연구용역 · 조사 단가

단가에는 **적용되는 해와 산정의 근거가 된 해**가 따로 있음. 둘을 혼동하면 어느 해의 단가를 써야 하는지가 어긋남.

표 9. 적용연도와 기준연도

구분	기준이 되는 시점	확인 사항
엔지니어링	2024년 적용분은 2024년 6월 30일 기준 임금을 2024년 10~11월에 조사	조사 시점과 적용 시점 사이에 시차 가 있음
건설사업관리	2024년 적용분은 2023년 조사분	공표는 전년 12월
중소제조업	2024년 1월 적용분은 2023년 8월 임금	반기마다 공표되므로 적용 시점의 회차 를 확인
학술연구용역	별표에 ' 〇〇년 기준 '으로 적함	예규 개정이 늦어지면 적용연도와 기준연도가 어긋남

자료: 각 기준의 공표 원문과 유의사항

학술연구용역이 특히 유의할 자리임. 별표에 적힌 기준연도와 실제로 적용하는 해가 다를 수 있으므로, 산정할 때에는 **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예규의 별표를 직접 확인**하여야 함.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회차별 원문을 그대로 두는 이유이기도 함.

중소제조업 노임은 **반기마다** 공표되므로 한 해에 두 회차가 있는 때가 있음. 이 보고서는 각 해의 **1월 적용분**으로 통일하여 집계하였고, 하반기 회차는 쓰지 아니하였음.

조사 시점의 시차도 실무에 닿음. 2024년 적용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**2024년 6월 30일** 기준 임금을 그해 10~11월에 조사한 것이어서, 조사가 끝난 시점과 단가가 쓰이는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음. 임금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**단가가 시장을 뒤따라가는** 형태가 됨.

이러한 어긋남을 정리해 두지 아니하면 **계산으로 만든 값을 원문 값처럼 쓰게 되는** 잘못이 생김. 예컨대 특정 해의 예규가 개정되지 아니하여 전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 경우, 그 해의 「단가」를 물가상승률로 보정하여 만들어 쓰는 것은 **원문에 없는 값을** 쓰는 것임.

V. 결과

11 최저임금과의 거리

1.77배에서 1.36배로
복지시설 1호봉

권고·예규 기준이 법정 기준보다 덜 오르면 **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짐**. 사회복지시설 1호봉을 최저임금 월액으로 나눈 배율을 8개년에 걸쳐 계산하면 그 좁혀짐이 수치로 나타남.

표 10. 최저임금 월액 대비 배율

구분	2017	2019	2021	2023	2024
복지시설 1호봉	1.77배	1.44배	1.43배	1.36배	1.36배
학술 책임연구원	2.30배	1.84배	1.77배	1.74배	1.76배

자료: 각 연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(209시간)으로 나눈 값. 계산은 본 연구소가 한 것임

사회복지시설 1호봉은 **1.77배에서 1.36배로**,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은 **2.30배에서 1.76배로** 좁혀졌음. 좁혀짐의 대부분이 **2017~2019년**에 일어났는데, 최저임금이 두 해 동안 크게 오른 시기와 겹침.

학술연구용역의 배율도 같은 모양임. **2.30배에서 1.84배**로 두 해 만에 크게 좁혀진 뒤 1.7배대에서 머물렀고, 2024년에는 오히려 1.74배에서 1.76배로 조금 벌어졌음.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2.5%로 낮아지고 학술 단가가 3.6% 오른 결과임.

2021년 이후로는 배율이 거의 변하지 않음.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낮아진 시기와 겹치며, 권고·예규 단가도 2022년 이후 3~5%대로 오르면서 **둘의 속도가 비슷해졌기** 때문으로 보임.

좁혀짐의 크기도 다름. 8년간 복지시설은 **0.41배포인트**, 학술연구용역은 **0.54배포인트** 줄었음. 출발점이 높았던 쪽이 더 크게 줄었음.

배율이 좁혀졌다는 사실이 곧 **권고 단가가 최저임금에 밀려 올라갔다**는 뜻은 아님. 권고 단가가 최저임금을 의식하여 정해진다는 근거는 공표문에서 확인되지 아니하며, 두 기준의 인상 시기가 겹치는 것만으로 연동을 단정할 수 없음. 다만 **1호봉이 최저임금에 가까워질수록** 그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임.

이 배율을 **처우의 적정성 지표로 읽어서는 아니 됨**. 1호봉은 신규 채용자의 기준선이고 실제 지급액은 호봉과 수당에 따라 달라지며, 최저임금 월액은 209시간을 전제한 환산값임.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**두 기준선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는 사실**뿐임.

V. 결과 (계속)

12 학술연구용역의 동결

연도별 변동

2017~2024

누적 상승률만 보면 학술연구용역과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같으나, 해마다의 움직임은 다름.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기준단가의 연도별 변동을 보면 **동결된 해**가 있음.

표 11. 학술연구용역 책임연구원 기준단가의 연도별 변동

구분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변동률	+1.9%	+1.5%	+0.4%	0.0%	+3.0%	+5.1%	+3.6%

자료: 각 연도 계약예규 별표 2의 책임연구원 기준단가

2021년은 전년과 같은 3,229,730원으로 변동이 없었음. 그 앞의 2020년도 0.4%에 그쳤으므로, **2019년부터 2021년까지 세 해 동안 사실상 멈추어** 있었던 셈임. 2022년 이후 3~5%대로 돌아섰음.

동결의 이유는 예규에 밝혀져 있지 아니함. 계약예규의 별표는 **금액만**을 싣고 산정의 근거를 적지 아니하므로, 어떤 사정으로 그해에 조정되지 아니하였는지는 **이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함.**

이 시기가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던 시기(2020년 2.87%, 2021년 1.5%)와 겹치나, **두 기준이 연동되어 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함.** 학술연구용역 기준단가의 산정 근거는 예규에 밝혀져 있지 아니하므로, 겹침을 인과로 읽을 수 없음.

동결이 누적에 미친 뒤통도 계산됨. 2019~2021년 세 해의 변동을 모두 더하면 **1.9%**에 그침. 같은 세 해 동안 최저임금은 15.9% 올랐으므로, 11절에서 본 배율의 좁혀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 구간에서 생겼음.

사회복지시설 기준은 움직임의 모양이 다름. 8년간 동결된 해가 없이 해마다 조금씩 올랐고, 누적으로 학술연구용역과 거의 같은 폭(16.6%)에 이르렀음. **같은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서로 달랐다**는 뜻이며, 누적 상승률만으로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아니함.

경로의 차이는 실무에 다른 부담을 남김.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 기준은 **매년 원가를 다시 계산**하여야 하고, 몇 해 멈추었다가 크게 오르는 기준은 **오르는 해에 예산이 한꺼번에 늘어남.** 어느 쪽이든 여러 해에 걸친 위탁에서는 단가의 변동을 협약이 어떻게 다루는지가 문제 됨.

실무에서 이 동결이 만드는 문제는 **여러 해에 걸친 용역**에서 나타남. 위탁기간이 3년이나 5년인 사무에서 기준단가가 두 해 동안 오르지 아니하면, 그 기간의 인건비는 계약 시점의 값에 묶임. 협약에 **단가 변동 시의 조정 조항**을 두었는지가 실제 차이를 만드는 자리임.

VI. 실무

13 원가 산정의 확인 순서

여섯 항목

집계에서 도출

표 12. 인건비 단가를 확인하는 순서

구분	확인 사항	근거
1	적용할 기준의 선택	사무의 성격에 맞는 기준을 고름. 다른 법령이 대가기준을 정한 용역은 그 기준이 우선 하고, 기준이 없으면 학술연구용역 단가를, 단순용역은 중소제조업 단순노무 노임 을 씀
2	적용 회차의 확인	적용연도와 기준연도가 어긋날 수 있음. 중소기업은 반기마다 공표되므로 회차를 확인
3	기준근무일수	일당을 월액으로 환산할 때 해당 회차의 근무일수 를 씀. 2023년을 사이에 둔 비교는 특히 확인
4	포함 범위	상여금·퇴직급여충당금·사회보험료가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지 . 포함된 것에 다시 더하면 중복
5	최저임금 저촉	산정한 인건비 단가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면 도급인의 연대책임 사유가 됨
6	기간 중 조정	여러 해에 걸친 위탁은 단가 변동 시의 조정 조항 을 협약에 두었는지 확인

자료: 각 기준의 유의사항과 이 보고서의 집계를 근거로 본 연구소가 정리

여섯 항목은 **산정의 앞 단계**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임. 1~4는 단가를 고르고 환산하는 단계이고, 5~6은 그렇게 정한 단가가 **계약의 기간 동안 유지되는지**를 확인하는 단계임.

여섯 가운데 **1과 4가 가장 자주 문제 됨**. 앞의 것은 사무의 성격을 가려야 하기 때문이고, 뒤의 것은 기준마다 포함 범위가 달라 **같은 항목을 두 번 계상**하기 쉽기 때문임.

5번은 특히 무겁게 볼 자리임. 「최저임금법」은 **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정한 경우**를 도급인의 책임 사유로 들고 있음. 원가 산정이 계약의 앞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, 그 단계에서 단가를 낮게 잡으면 **뒤에 발생하는 미지급의 책임**이 위탁기관에 미칠 수 있음.

본 연구소가 앞서 정리한 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(KIEM-REPO-2023-01)가 **계산의 총위**를 다루었다면, 이 보고서는 그 층에 들어가는 **단가가 8년간 어떻게 움직였는지**를 다룬 것임.

VI. 실무 (계속)

14 학술 문헌의 논의

대가기준의 산정

KCI 등재 문헌 3편

용역 대가의 산정 기준이 합리적인지는 학계에서도 다루어져 왔음. 다만 논의의 무게는 **산정 방식의 설계**에 있고, 여러 해에 걸친 단가의 이동을 집계한 논의는 확인 범위에 없었음.

세 편은 각각 다른 분야를 다룸 — 기술용역 일반, 건설사업관리, 사회서비스임. 이 보고서가 8개 기준을 한자리에 놓은 것과 달리 문헌은 **한 분야씩** 검토하였으므로, 인용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대목으로 한정하였음.

이태원·이강(2014)은 국가 예산으로 발주하는 **기술용역의 대가기준**을 검토하여, 공공기관이 국가계약법에 따라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구조에서 **투명한 용역비 산출방법**을 도출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음. 이 보고서가 09절에서 다룬 **기준근무일수와 포함 범위**의 문제는 그 산출방법의 세부에 해당함.

신명로·임남기(2014)는 공공 시설공사의 **건설사업관리 용역**에서 적정한 대가가 지급되는지를 검토하여, 용역이 **비용을 기준으로 선정되면서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추가 업무가 고려되지 아니한다**고 지적하였음. 이 보고서에서 건설사업관리 노임가격이 8년간 36.9% 올랐음이 확인되나, 그 단가가 실제 업무량에 견주어 적정한지는 **다른 층위의 물음임**.

김영종(2017)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를 검토하였음.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**권고기준**에 머물러 있고 그 준수 여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에 달려 있다는 이 보고서의 관찰은, 사회서비스의 공급 구조를 다룬 그 논의와 같은 자리를 가리킴.

문헌이 다루지 아니한 자리도 있음. 세 편 모두 **하나의 기준**을 대상으로 그 산정 방식을 검토한 것이며, 여러 기준을 나란히 놓고 **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였는지**를 본 논의는 확인 범위에 없었음. 위탁 사무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어 한 자치단체가 여러 기준을 동시에 쓰는 사정을 생각하면, 기준들 사이의 관계도 다루어질 자리로 보임.

다만 이를 학계의 공백으로 단정할 것은 아님.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하였다는 사실과 그러한 논의가 없다는 사실은 다르며, 이 보고서의 검색은 **KCI 등재 정보에 한정된** 것임.

세 편을 함께 보면 **대가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**가 공통의 물음임. 이 보고서는 그 물음에 **현재의 기준들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**를 더한 것이며, 어느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아니하였음.

인용한 세 편 가운데 둘이 2014년 문헌임. 이 보고서가 다루는 기간(2017~2024)보다 앞서므로, 문헌이 지적한 문제가 그 뒤에 개선되었는지는 **이 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함**. 다만 기준근무일수의 변경처럼 산정 방식이 실제로 바뀐 사례가 있으므로, 제도가 멈추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님.

근거와 한계

인용한 기준

표 13. 이 보고서가 집계한 기준의 출처

구분	공표 문서	집계 범위
최저임금	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	2017~2024 각 연도
엔지니어링	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공표문	2017~2024 각 연도
측량	측량기술자 노임단가 공표문	2017~2024 각 연도
건설사업관리	건설사업관리기술인 노임가격 공표문	2017~2024 각 연도
중소제조업	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	각 연도 1월 적용분
소프트웨어	SW기술자 평균임금 공표문	2018~2024 (2017·2019 결측)
학술연구용역	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	2017~2024 각 연도
사회복지시설	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	2017~2024 각 연도, 생활시설 기준

자료: 본 연구소가 자료실에 정리하여 둔 각 기준의 공표 원문. 회차별 원문은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

자료실의 회차별 원문에는 각 기준의 **공표 일자**와 **적용 기간**이 함께 실려 있음. 이 보고서가 「2024년 적용분」이라 적은 것은 그 원문에 적힌 적용 기간을 따른 것이며, 공표 시점과는 다를 수 있음.

집계에 쓴 항목을 다시 밝혀 둠 — 최저임금은 **시간급을 1일 8시간으로 환산한 값**, 엔지니어링과 중소기업은 **공표문에 실린 평균**, 측량은 **기술계 고급**, 건설사업관리는 **환산비 1.000인 고급**, 소프트웨어는 **IT기획자의 1일 평균임금**, 학술연구용역은 **책임연구원 월 기준단가**, 사회복지시설은 **생활시설 1호봉 월 봉급임**.

자료실의 원문은 회차마다 **유의사항**을 함께 정리해 두었음. 이 보고서가 인용한 산정 방식과 적용 범위에 관한 서술 — 근무일수의 산출, 임금의 구성 내역, 권고기준의 성격, 대가기준의 우선순위 — 은 모두 그 유의사항에 실린 내용을 옮긴 것임.

11절의 배율은 최저임금의 **월 환산액**으로 나눈 값임. 「최저임금법」이 정한 대로 월 209시간을 전제한 값이며, 고시문에 함께 실린 월액을 그대로 썼음.

수치는 모두 **공표 원문에 적힌 값**을 옮긴 것이며, 상승률과 배율, 근무일수를 반영한 월액은 그 값으로부터 **본 연구소가 계산한 것**임. 계산으로 만든 값을 원문 값으로 적은 곳은 없음.

근거와 한계 (계속)

참고 문헌

표 14. 참고한 학술 문헌

저자	제목	출처
이태원·이강	기술용역 대가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	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15(2), 2014, 33-43
신명로·임남기	공공 시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적정대가 지급 방안 개선 연구	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6(4), 2014, 141-148
김영종	우리나라 사회서비스와 민간위탁 제도 연구	보건사회연구 37(4), 2017, 406-442

서지는 KCI 등재 정보로 대조하였음

문헌 검토의 범위

학술 문헌은 KCI 등재 정보에서 **용역 대가기준·원가계산·노임단가**를 축으로 찾아 검토하였고, 이 보고서의 관찰에 닿는 **세 편**을 인용하였음.

검토의 범위를 좁힌 이유도 적어 됨. **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친 영향**을 다룬 문헌은 노동경제 분야에 다수 있으나, 이 보고서의 물음이 **위탁 원가의 산정 기준**에 있으므로 대가기준과 원가계산을 다룬 문헌으로 한정하였음.

다만 **여러 해에 걸쳐 인건비 기준의 변동**을 집계한 **선행 문헌은 확인하지 못하였음**. 개별 기준의 산정 방식을 다룬 연구는 있으나 **기준들 사이의 상승 폭을 견준 연구**는 확인 범위에 없었으므로, 이 보고서의 집계와 직접 대조할 수 있는 수치는 없음.

학위논문과 연구기관 보고서를 제외한 것은 **서지를 같은 기준으로 대조하기 어렵기** 때문이며, 그러한 자료에 관련 논의가 없다는 뜻이 아님.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다룬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인용하지 아니하였음.

인용한 세 편의 논지는 각 문헌이 밝힌 범위로만 옮겼고, 이 보고서의 집계로 **그 결론을 지지하거나 반박하지 아니하였음**. 문헌이 검토한 시점(2014년·2017년)과 이 집계의 기간이 겹치기는 하나, 문헌은 **산정 방식의 설계**를 다루고 이 보고서는 **단가의 이동**을 다루어 층위가 다르기 때문임.

후속 검토의 여지도 남음. 기준근무일수의 변경(2023년) 이후의 산정 방식을 다룬 문헌이 축적되면 이 집계의 관찰과 대조할 수 있을 것이며, 생활임금과 같이 이 보고서가 단면으로만 다룬 기준은 회차가 갖추어진 뒤 별도의 집계 대상이 될 수 있음.

근거와 한계 (계속)

이 보고서의 한계

유의 사항

2024년 7월까지 공표된 자료 기준임. 기준마다 **포함하는 임금의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달라 절대액을 견줄 수 없으므로**, 이 보고서는 변동률만을 비교하였고 어느 기준이 높거나 낮다고 적지 아니하였음. 등급이 여럿인 기준은 **기준등급 하나**를 골랐으므로 다른 등급의 상승 폭은 다를 수 있음. 소프트웨어는 2017년과 2019년 자료가 없어 **다른 기준과 같은 기간이 아니며** 표에 함께 놓지 아니하였음. **물가상승률과 대조하지 아니하였으므로** '덜 올랐다'는 것은 이 8개 기준 안에서의 상대적 위치일 뿐 적정성에 대한 판단이 아님. 결정 방식과 상승 폭이 같은 순서로 늘어선다는 사실이 확인될 뿐 **인과가 증명된 것은 아니며**, 각 산업의 임금 사정이 함께 작용하였을 수 있음. 사회복지시설 기준은 **권고된 기준선**이지 전국의 실제 지급액이 아님. 개별 사무의 원가는 적용 법령과 협약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집계를 개별 산정의 근거로 삼을 것은 아님.

함께 볼 자료

원가 계산의 총위와 예정가격 결정 구조는 **위탁사무 원가 산정의 구조**(KIEM-REPO-2023-01), 위탁금의 교부와 정산은 **위탁금의 회계**(KIEM-REPO-2024-01)에서 각각 다루었음. 각 기준의 회차별 원문과 유의사항은 **자료실**에 정리되어 있음.

문의

내용의 문의는 **한국관리위탁연구소**로 하시기 바람.